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사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신정훈의원 (2213967)	2025. 11. 6.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2.0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송재봉의원 (2214247)	2025. 11. 14.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2.0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위성곤의원 (2214416)	2025. 11. 20.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2.0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사경과
			사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김은혜의원 (2216277)	2026. 1. 23.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원회 직접 회부(26.03.10.)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의 ‘픽시 자전거’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외에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자전거의 정의에서 제동장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 것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 나. 자전거의 안전요건으로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추 것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전거도로에서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 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21조).
- 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조향장치(操向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자전거는 구조”를 “자전거(자전거 경기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까지 같다)는 구조, 장치”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제한구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

용한다.

제21조제2항 중 “교통안전교육 등을”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중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 4. (생략)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조(정의) ----- -----. 1. ----- ----- ----- ----조향장치(操向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 1의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자전거(자전거 경기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까지 같다)는 구조, 장치----- -----. 이 경우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 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한다.

② -----자전거-----

-----.

③ -----
-----자전거-----

-.

④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제한 구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 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③ -----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u>전기자전거</u>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u>전기자전거</u>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u>전기자전거</u>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u>전기자전거</u>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u>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u>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4조(벌칙) ----- -----<u>자전거</u>----- -----<u>자전거</u>----- ----- -----. 제25조(과태료) ① ----- -----<u>자전거</u>----- -----<u>자전거</u>----- ----- -----. ② (현행과 같음)
---	--